

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신규조건 대비표

개정 조항	현행	개정안	개정 사유
제13조(이중수혜 제한)	제② ~ ③ (생략) ① 교내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.(단, 공로장학, 가족장학, 학품조성 장학, 사랑장학, 성적향상장학, 도우미장학, <u>생활관장학</u>, 평보장학, 스타장학 “재학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” 는 예외로 한다.)	① 교내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.(단, 공로장학, 가족장학, 학품조성 장학, 사랑장학, 성적향상장학, 도우미장학, <u>가산출지원 장학</u>, 평보장학, 스타장학 <u>중에서</u> “재학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”, <u>전공인재육성 장학</u>은 예외로 한다.) ② ~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입생 중 교내장학 대상자이나 입학 전 등록금 면제로 인해 이중수혜 제한 대상이 된 경우 경우 차액에 한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단, 일회학기에 한해 지급한다.)	- 생활관 장학 명칭 변경 및 장학 신설에 따른 개정 (일부 문구 변경) - 입학전에 일괄선발된 경우 학생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수혜 제한 예외 규정 명시
제14조(교외장학)	① ~ ② (생략) <신설>	① ~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외(사설 및 기타) 장학생 선발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.	- 교외 사설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자 함(단,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명시)

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

개정 조항	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부칙		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이중수혜 예외 장학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) 제13조제1항의 이중수혜 예외 장학 명칭 변경 및 추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이중수혜 대상자 교내장학 차액지급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) 제13조제4항의 이중수혜 교내장학 차액지급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도 적용한다.	